

교원양성위원회규정

제정 : 2008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교원양성위원회”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제2조(조직) ①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(위원 중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② 위원장은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

2.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<개정 2014. 11. 01.>

3.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3조(임기) ①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교원양성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